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229
----------	------

2025. 1. 16.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발의자: 2025. 1. 8.(수) 광양시장

나. 회부일: 2025. 1. 8.(수)

다. 상정일: 2025. 1. 16.(목)

-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하수처리 원가 상승과 시설 확충 등의 시설투자비 증가에 대처하고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도모와 하수의 안전 처리를 위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
-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등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인상 추진

나. 주요 내용

- **【별표 1】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 인구수 유사 자치단체의 요금현실화율(27.13%)과 전남 4개시 요금 현실화율(26.55%)를 참고하여 목표현실화율 산정(27.13%)
 - * 인구수 유사 전국 4개시 : 충북 제천 28.17% 경북 김천 44.64% 경북 안동 18.97% 경남 통영 16.76%
 - * 전남 4개시 : 순천 36.24% 여수 32.90% 목포 32.53% 나주 8.12%
 - 2025~2027년까지 연도별 사용료 인상

○ **【별표 6】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 2009년 11월 인상 이후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 수집·운반업체의 영업손실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수수료 인상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10리터당 125원→220원

3.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 원가 상승과 시설 확충 등의 시설투자비 증가에 대처하고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도모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3개년 동안 단계별로 목표 현실화율을 27.13%까지 산정하고, 2009년 11월 인상 이후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 수집·운반업체의 영업손실 보전이 필요하여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10리터당 125원에서 220원으로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6명)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의 경우 2025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고,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1월 고지분(전년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5. 1., 2021. 6. 4.>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 2021. 6. 4.>

1.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제1호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4.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8조 삭제 <2019. 5. 1.>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 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

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 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6. 4.>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6. 1. 14.>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 5. 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삭제 <2016. 11. 14.>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8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목개정 2023. 5. 3.> 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5. 3.>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 발생량 <개정 2016. 1

1. 14.>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6. 11. 14.>※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광양시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고시하고 광양시 누리집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4.>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11. 14.>

6. 삭제 <2019. 5. 1.>

②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9. 5. 1.> <개정 2023. 5. 3.>

1. 통보시기 :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 인허가 당시 단위단가 개산금액으로 통보한다.

2. 부과시기 및 금액산정

가. 부과시기는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때는 그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재부과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시에 부과한다.

다. 영업신고·등록 등 개별법에 의한 즉시민원 처리의 경우에는 신

고·등록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라. 납부고지서는 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3. 납부기한

가.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다만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승인(준공) 전까지로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사용승인(준공검사)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 수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1.>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 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1.>

⑤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5. 1.>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21.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5. 3.>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것.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광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④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1., 2021. 6. 4.>

제20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3.]

제21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시설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정한 오수·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21조의2(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제21조의3(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영 제33조의2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체 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용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1. 대체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설치사업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위탁과 도로청소용 진공 흡입차량 위탁, 공중화장실 위탁 등의 주선

2.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기본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의 지원

3.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용자알선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용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5.>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삭제 <2021. 6. 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시장이 지정한 자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 6. 4.>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1. 6. 4.>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 6. 4.>

제24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3의 비율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100분의 3의 비율로 날수대로 계산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text{가산금} = \text{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text{연체일수} / \text{해당하는 월의 일수})$ <개정 2016. 11. 1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4.>

제25조 삭제 <2019. 5. 1.>

제26조(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

다.

1. 공공하수도 사용료 : 3년
2. 제1호 이외의 미납된 징수금 : 5년
3. 과오납된 징수금 : 5년

[본조신설 2021. 6. 4.]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의 경우 2025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고,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1월 고지분(전년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³ /월)	단 가(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가정용	1~20	690	740	790	830
	21~30	810	870	930	980
	31이상	930	990	1,050	1,120
일반용	1~100	1,000	1,050	1,100	1,150
	101~300	1,150	1,210	1,270	1,320
	301~500	1,300	1,360	1,420	1,490
	501이상	1,450	1,520	1,590	1,670
전용공업용	1~150	850	900	950	1,010
	151이상	1,000	1,060	1,120	1,18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전 용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곳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제21조의2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집·운반 수수료
분 뇨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 포함)	10L 당	220원